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3. 16
시민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2월 6일 영등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4년 12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31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95. 3. 1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1)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 2)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을 지방자치단체장 판단 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2)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3)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10조)
- 4)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함(안 제12조)
- 5)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 15조)

- 6) 일정시설기준·전담관리인 배치·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
- 7) 개선명령 이행 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지금까지의 공중화장실 개방을 지방자치단체에 법적 근거가 없이 행정지도로 개방권유하였던 것으로 전세계인들의 한국관광 방문의 계기로 외국인 여행자들에게나 일반인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관리를 하므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방하려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임.

아울러 일반대형건물이나 공중화장실을 규정에 맞는 운영을 하고 유료화장실화 하고자 할 때는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장치를 마련하므로 많은 이용자들의 청결한 화장실 이용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사료됨.

1.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는 청결유지와 위생적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2. 공중화장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정하고,
3. 일반 다중이용화장실도 건축주와 협의하여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4. 공중화장실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규정에 맞게 요건을 갖춘 것을 유료화장실화 하도록 하고, 이들 제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규정을 두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본 조례안 규정의 법적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기준안이 하달되므로 기준에 맞도록 제정하였다고 생각되나 조례 제5조 5호-7호, 제10조 1호-3호, 제16조 1호-3호, 제17조 1호-4호 말미에 할 것이라는 지시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말미에 “할 것”이 “하여야 한다”로 자구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283
----------	-----

제출년월일 : 1994.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뿐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음.
- 나. 국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은 물론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함.
- 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에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함.
- 라. 불결하고 시설정비·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 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10조)

라.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함(안 제12조)

마.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 제15조)

바. 일정시설기준·전담관리인 배치·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개선명령 이행 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합 의 : 의견없음

라. 기 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안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 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여객시설.
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1.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12.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13.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전문휴양, 종합휴양시설.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5.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6. 구청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5개

이상 또는 5인용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센티미터이상, 세로 115센티미터이상(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수세식일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올기(또는 롤러타올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여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시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유지·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

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1회이상 도색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관리상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시설개선명령

제13조(시설점검)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2회(상·

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명령) 구청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청결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①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승인

제16조(유료화장실 승인)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담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1회 사용료를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등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등) ①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은 별표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 이상일 때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단위 : 만원)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제5조			
가. 제5조 제1, 2, 3, 4호 위반		20	40	60
나. 제5조 제5, 6, 7호 위반		10	20	30
2. 관리인 미지정 및 청결 관리에 소홀히 한 때	제8조	10	20	30
3.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지 아니한 때	제9조	10	20	30
4.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한 때	제10조	20	30	50
5.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17조	20	30	50
	(제2호 내지 제4호)			